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및운용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95. 2. 28.

시민보건위원회

1. 심사결과

나. 회부일자 : '95. 2. 18.

다. 상정일자 : 제27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95.2.28.)상정, 심사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유승권 청소과장)

가. 제안이유

동 조례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 제정권의 위임근거를 규정함에
동시에 본 조례의 제정·시행이 '

93.1.1부터이므로 본 기금의 운용계획
서등을 '94년 마포구의회 정기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사정
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95회계년도
에 한하여 이의 적용특례를 마련함으
로써 기금설치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
고 기금관리 및 운용의 효율성을 제
고코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조례시행을 위한 시행규칙 제정권의 위임근거를 규정함(안 제11조)
 - 본 기금의 운용계획서등의 구의회 사전승인에 관하여 '95회계년도에 한하여 기금운용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결산서와는 별도로 이 조례 개정이후 최초에 개최되는 구의회 임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적용특례 마련(안 부칙 제2항)

○ 위 “나”항의 경우 승인직전까지 집행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구의회의 사전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함(안 부칙 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김건재)

가. 동 조례에 의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대금은 자치구에서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재활용품의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과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으로 사용코자 신설된 기금임.

나. 동 조례안 부칙 제2호(적용특례)에서 동 기금운용계획에서 의회 승인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예산회계법 제7조등의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심도있는 법적 검토가 요망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수정(안)가결할 것을 동의

6. 수정(안)요지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1995.2.28. 홍길표 위원 외 1인

나. 수정이유

– 동 조례(안) 부칙 제2호(적용특례)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예산회계법 제7조 등과 관련하여 볼 때 삭제하여야도 조례 운용상 문제점이 없음.

다. 수정주요골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로 수정함.(안 제9조제2항)

– 조례 운용상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함.(안 부칙 제2호)

7.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사항 : 수정(안)별첨

서울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증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1995. 2. 28.

제안자 : 시민보건위원장

1. 수정이유

– 동 조례(안)부칙 제2호(적용특례)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예산회계법 제7조 등과 관련하여 볼 때 삭제하여야도 조례 운용상 문제점이 없음.

2. 수정주요골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로 수정함.(안 제9조제2항)

– 조례 운용상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함.(안 부칙 제2호)

서울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증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2항중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로 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안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원안·수정안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생략)</p> <p>②</p> <p>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2. (적용특례)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안은 1995회계년도에 한하여 결산서와는 별도로 이 조례 개정이후 최초에 개최되는 구의회 임시회의에 제출하는 승인을 받은후 집행토록 한다.</p> <p>다만, 승인을 받기 직전까지 집행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구의회의 사전승인을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p>	<p>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원안과 같음)</p> <p>②</p> <p>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80
----------	-----

제출년월일 : '95. 2. 17.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동 조례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시행 규칙 제정권의 위임근거를 규정함과 동시에 본 조례의 제정 시행일이 '95.1.1 부터 이므로 본 기금의 운용계획서등을 '94년 마포구의회 정기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사정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95회계년도에 한하여 이

의 적용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기금설치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기금관리 및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개정골자

- 가. 조례시행을 위한 시행규칙 제정권의 위임근거를 규정함(안 제11조)
- 나. 본 기금의 운용계획서등의 구의회 사전승인에 관하여 '95회계년도에 한하여 기금운용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안을 결산서와는 별도로 이 조례 개정이후 최초에 개최되는 구의회 임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적용 특례 마련(안 부칙 제2항)

다. 위 “나”항의 경우 승인직전까지 집행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구의회의 사전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함(안
부칙 제2항)

3. 개정근거

가. 지방자치법(1994.12.20. 법률 제4789호)
제15조, 제133조

나. 지방재정법(1991.12.31. 법률 제4466호)
제110조

다. 지방재정법시행령(1994.9.29. 대통령령)
제14391호)제156조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필요성 : 필요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를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10조중 “동법시행령”을 “지방재정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특례)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안은 1995 회계년도에 한하여 결산서와는 별도로 이 조례 개정이후 최초에 개최되는 구의회임시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후 집행토록 한다. 다만, 승인을 받기 직전 까지 집행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구의회의 사전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생략)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 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 산서와 함께 <u>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u>에 제 출하여야 한다.</p>	<p>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현행과 같음)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 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 산서와 함께 <u>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u>에 제출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준용)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과 <u>동법시행령</u> 및 서울특별시마포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p> <p>(신설)</p>	<p>제10조(준용)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과 <u>지방재정법시행령</u> 및 서울특별시마포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p> <p><u>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심사 보고서

'95. 2. 28.

시민보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4. 11. 23.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94. 11. 23.

다. 상정일자 : 제26회 정기회 제9차위원회('94.12.23.) 상정, 심사
제27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95.2.28.)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유승권 청소과장)

가. 제안이유

본격적인 국제화·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일정한 오전을 갖춘 공중화장실을 유료화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법인·개

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포괄하여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 함.(안 제4조)

○ 공중화장실에 필수적·임의적으로 두어야 할 시설의 설치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제10조)

○ 개선명령 이행기간내 시설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자의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김전재)

○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도시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과 철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 등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공중화장실의 난방시설·환풍시설과 조명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시설개선명령 이행기간내 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자와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